

의안번호	제 26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	-----

발의연월일 : 2023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병천·김현문·이정범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기념사업(안 제5조)
- 마. 지원(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학교 역사관·전시실 건립
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개교 100주년’ 학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3. 관련조문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연도별 지원 학교 수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초	2	2		1	4	9
중	1					1
고	1					1
합계	4	2	0	1	4	11

나. 추계결과 : 220,000천원

- 산출내역 : 1교×20,000,000원×1회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초	40,000	40,000		20,000	80,000	180,000
중	20,000					20,000
고	20,000					20,000
합계	80,000	40,000	0	20,000	80,000	2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00%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개교100주년 학교 지원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재원 조달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의존 재원	소 계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80,000	40,000		20,000	80,000	22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